

한국언론의 법·윤리환경의 변천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신방과 교수

I. 머 리 에

한국의 언론은 언론 자체에 대한 외부의 간섭과 탄압에는 민감하였으나 이에 비해 언론이 개인이나 기업체 또는 특정 집단 등에 대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등한하였었다. 이는 언론이 초창기부터 외부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성장해왔다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한국언론은 한말부터 일제기간 동안은 국가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수난을 겪었으며 해방 후 4.19까지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독재와 투쟁해 왔다는 대의명분이 있었다. 5.16 후에는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흔히 있었다. 따라서 언론은 권력 또는 금력 등 언론 외부로부터 일방적인 탄압을 받아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반면에 언론이 인권이나 기업체, 특정 집단과 계층 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는 경시되었거나 언론이 탄압받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거론의 시기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국언론의 역사는 주로 언론이 외부로부터 탄압받는다는 관점에서 쓰여졌다. 한국언론이 처했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에는 이는 올바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은 탄압 받는 가운데서도 개인이나 기업체 또는 특정계층 등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5.16 직후 군사정권은 언론통제를 위한 구실로 「책임있는 언론의 창달」을 강조하면서 명예훼손 기사의 게재를 금지하는 규정을 입법화하여 언론에 제도적인 재갈을 물리려고 시도했었다. 민정이양 직후였던 1964년에 공화당 정권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했던 것도 언론자유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언론계의 일치된 견해였다. 이와 같이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탄압받아 온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탄압받는 시기라 하여 언론이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했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권력은 이를 빌미로 언론에 탄압을 가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므로 언론이 자율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하지 않으면 결국 권력이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자각이 싹트게 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대개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가 제2공화국 시절 사이비 언론이 발호했을 때에 언론윤리기구 구성문제가 구체적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61년 9월에 창립된 신문윤리위원회였다. 20여년이 지난 뒤인 1980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창립되면서 언론침해에 대한 인식은 언론과 국민간에 다같이 크게 고조되었다. 80년대에 와서 언론침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기까지에는 몇 단계의 법윤리적인 변천을 겪었으므로 이를 먼저 개관한 다음에 80년대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이후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 관련된 법윤리 환경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1980 년 이전의 법 · 윤리 환경

1. 한말 일제치하

우리나라에서 언론관계법의 제정이 처음으로 시도된 것은 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이 창간된 지 2 년 뒤인 1898 년 10 월이었다. 독립신문 이후에 창간된 몇 개 민간지들이 열강의 한국침탈을 비판하고 그들의 이권요구를 폭로하는 기사를 자주 게재하자 주한 열강 공사들은 신문지법을 제정하여 언론을 통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한 제국 정부는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모방하여 1899 년 1 월, 36 조로 된 신문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너무 가혹한 규제조항이 많다는 언론계의 반발로 인해 이를 시행하지도 않은 채 폐기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한말에도 신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더러 있었다. 1898 년 7 월경 대한황성신문이 경기도 과천군수 길영수로부터 피소 당한 사건을 시초로 해서 1899 년 3 월 이인영이 독립신문을 고소한 사건, 1907 년 3 월 만세보가 전남관찰사 심상익으로부터 피소 당한 사건, 1909 년 4 월 황성신문 사장 류근이 진주관찰사 황철로부터 피소당해 태형 10 대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등이 있었다. 1) 모두가 정치적인 언론탄압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건이었다. 언론침해의 규정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은 이완용 내각이 법률 제 1 호로 「신문지법」을 공포한 때부터였다. 흔히 광무신문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 제 15 조는 「인을 비훼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항을 기재함을 부득함이라」 하여 타인에 대한비방 또는 명예훼손을 금지하도록 하고, 제 33 조에서 「제 십오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조언률에 의하여 처단하되 피해자 또는 관계자의 고소를 득하여 기 죄를 논함」이라 하였다. 이 광무신문지법에서 규정한 형법의 <조언률>은 1905 년 4 월에 제정된 한 제국의 형법 제 404 조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관계되는 언단을 출하여 시비가 전도하거나 분쟁함에 치하는 자는 축 삼십 하되 인하여 일반관리의 명예손해에 관한 자는 이등을 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앞에서 말한 1909 년의 황성신문 사장 류근과 만세보의 피소사건에는 바로 이 <조언률>이 적용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일합방 후에는 언론의 명예훼손에 관해서 1907 년에 제정된 일본의 형법 제 34 장(명예에 대한 죄)를 적용했었다. 여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실의 유무를 불문코 일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 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0 조)는 조항에 이어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31 조) 하여 비록 공익을 위해서 보도한 기사라도 명예훼손에 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여 처벌의 범위를 제한 없이 넓혀 놓았다.2)

신문지법은 보도된 기사와 관련된 당사자가정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문이 당연히 이를 실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때 만일 피해자가 원래 보도했던 기사와 같거나 그 이하의 크기로 「정오서」 또는 「변박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그대로 실어주어야 하되, 정오서나 변박서의 길이가 원래 기사보다 길 경우라도 그에 해당하는 광고료를 지불하면 그대로 실어 주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강제 조항까지 들어있었다. 「기사에 관하여 관계자가 정오를 청구하거나 혹 정오서 혹 변박서의 게재를 청구한 시는 차회에 발행하는 지상에 게재함이 가함. 정오서 우는 변박서의 자수가 원기사의 자수에 이배를 초과하는 시는 기 초과 자수에 대하여 보통 광고료와 동일한 금액을 요구함을 득함」(20 조)

이 정정보도기사 게재에 대한 강제조항은 자주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1927년 6월 27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삼구회의 「기사취소청구서」 같은 것을 그 구체적인 예로 들 수가 있다.³⁾ 신문지법이 일제치하에 민족언론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사용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언론을 탄압하는데 가장 손쉽게 내세운 조항은 보안법 치안유지법 등의 「치안방해」 조항과 앞에서 인용한 형법의 「명예훼손」 조항이었다. 특히 신문지법과 형법의 명예훼손 조항은 친일파나 지방의 말단 관리들이 이를 즐겨 악용하여 사실보도에 대해서 까지도 기사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고소를 제기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취재기자나 본사 간부까지 구속되는 사례가 많았다.

2. 제1 공화국과 민주당 치하

해방 후 명예훼손 문제와 함께 프라이버시라는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였다. 50년대 초반까지는 혼란과 전쟁의 와중에서 명예훼손이라는 문제를 차분하게 생각할 여건이 못되었고, 50년대 후반은 자유당정권의 독재체제에 항거하는 반독재투쟁에 앞장선 언론으로서 명예훼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분위기도 아니었다. 더구나 일제치하에서 명예훼손이 언론탄압의 구실로 악용되었음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언론의 침해사례는 언론계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수준향상을 내걸고 모인 젊은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에서 이러한 문제에도 눈을 돌려 1957년 초에 부완혁을 초청하여 「명예훼손문제」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을 갖게 되었다. 이해 8월에 관훈클럽이 프린트 판으로 발행한 <회지> 첫 호에는 박경량이 미국의 한 신문에서 가지고 온 보도준칙을 번역 게재하여 미국의 신문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⁴⁾ 아마도 프라이버시라는 용어의 개념을 우리나라 언론계에 처음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이 아닌가 한다. 5.16 직전인 1961년 봄에는 관훈클럽이 <회지>를 발전시켜 발간한 <신문연구>에 「신문의 책임」이라는 특집을 마련하고 특히 신문윤리와 프라이버시의 권리라는 문제를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 신문연구의 이러한 특집은 당시 사이비언론의 발호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제기 되는데 대해 언론계에서도 자체정화의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이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4.19 이전까지는 언론이 반독재 투쟁,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하여 신문의 책임과 윤리성에는 소홀하였다. 4.19 이후에는 언론자유에 제한 없는 보장과 발행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수 많은 신문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언론의 질적인 저하가 뒤따르게 되었다. 이때 언론계에서도 자율정화를 위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보려는 언론 자체의 노력이 구체화되기 전에 5.16이 일어났다.

3. 신문윤리위원회의 구성

군사정부는 신문의 일제정비를 단행하면서 언론의 윤리와 책임문제를 언론통제의 차원에서 제기하게 되었다. 1961년 7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초한 「신문 등 등록법안」을 발표했다. 「책임있는 언론의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안은 두 가지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었다. 제 6조 명예훼손 기사의 게재금지와 제 7조 등록의

취소 조항이 그것이었다. 내용은 신문과 통신이 사실이 아닌 기사를 게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도록 하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하거나 또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이 법은 그보다 3년 후인 1964년에 공화당측이 국회통과까지 시켰던 언론윤리위원회법과 같은 취지였던 것이다.⁵⁾ 이에 대해 언론계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한국신문윤리위의 구성을 서둘렀다. 이는 책임있는 신문의 제작으로 빈발하는 필화사건을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수사당국이 기사를 문제 삼아 언론에 통제를 가하기에 앞서 언론계가 스스로 책임 있는 제작태도를 지키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 주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었다. 최고회의가 신문 등 등록법안을 발표한 지 3일 뒤인 7월 31일 편집인협회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회칙을 인준하고, 1957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제정하면서 채택했던 신문윤리강령을 개정하여 이를 채택했다. 이어 8월 25일에는 윤리위원회위원장에 대법관을 지냈던 변호사 김세완을 선출하고 9월 12일에는 신문윤리위원회를 창립했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법률에 의해서만 다루어왔던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 문제를 언론계가 자율적인 기구를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자율기구였기 때문에 언론침해를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은 그대로 열려 있어서, 피해자가 언론을 상대로 윤리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법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는 길도 공존하게 된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창설 후 처음에는 제소사건만을 다루었으나 1964년 공화당 정권이 신문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자 자체에 심의실을 설치하여 전국의 신문을 매일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언론의 책임과 윤리문제를 법에 따라 다룰 것이 아니라 언론계가 스스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외부의 관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1961년에 신문윤리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한 뒤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겪으면서 그 기능을 강화한 이래 198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피해자들의 제소건수는 1970년을 고비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가장 많은 제소가 있었던 해는 1965년으로 36건의 제소가 있었는데 이는 신문윤리위원회의 구성 직후에는 그 기능에 대해 일반인과 취재원의 기대가 다 같이 매우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는 제소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70년대에는 현저히 감소하여 1978년 이후에는 일년에 한 건의 제소도 없게 되고 말았다. 윤리위원회 창설 후 1980년까지의 연도별 제소건수는 다음과 같다. 제소의 이유는 대부분이 명예훼손이었다. 1961(9), 1962(10), 1963(7), 1964(9), 1965(36), 1966(28), 1967(13), 1968(32), 1969(15), 1970(17), 1971(5), 1972(5), 1973(3), 1974(9), 1975(1), 1976(4), 1977(3).⁶⁾

4. 법률에 의한 피해보상

신문이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피해자는 윤리위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여 정정 또는 해명의 방법으로 이를 보상 받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는 법률에 의한 피해보상의 방법이 있다. 법률에 의한 피해보상은 크게 보아 형법에 의한 처벌과, 민법에 의한 피해보상이 있다. 이 두 법은 친고제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때에 한해서 사건화되는 것이다. 해방 후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소된 사건이 그리 많지는 않았으나,

신문윤리위원회가 구성된 뒤에도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침해의 시대별 유형」(언론중재, 1982 겨울호)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제 2 공화국 시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은 1961년 3월 20일 대전지방법원이 판결했던 대전매일신문 사건이 있었다. 재판부는 논설위원 정우택과 취재기자 송운에 대한 재판에서 정우택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송운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⁷⁾ 제 2 공화국 시절 또 하나의 명예훼손 필화사건은 1961년 3월 혁신계 신문 민족일보가 은행집회소 회원인 산업은행 등 은행장 6 명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한 일이었다.⁸⁾ 그러나 곧 5.16 이 일어나 민족일보가 폐간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은 법적인 결말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III. 언론중재위원회 이후의 환경 변화

1. 언론의 선정적 보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전까지 형법과 민법 등 법률에 의해서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과 신문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사과 또는 정정보도를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는 두 가지 방법에 더하여 간편한 절차로 피해자가 구제받는 법적 전치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는 언론의 개인의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자각이 높아졌다. 그러나 80년대 초의 정치상황은 언론이 정치문제를 정면에서 깊이있게 다루기 어렵게 되어있었으므로 사회문제에 대한 보도경쟁이 치열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언론의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게 되었다. 1981년에 일어났던 윤경화 노파의 의문의 피살과 여대생 박상은양의 피살사건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피해자들의 사생활, 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실들을 보도하여 사자의 명예훼손 문제가 반성의 대상이 되었고, 윤노파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고숙종 여인과 박상은 사건의 피의자였던 대학생들이 모두 무죄로 풀려나자 결과적으로 언론의 오보 또는 과장보도로 인한 피의자의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편집인협회가 「사건기사 보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각 사 사회부장 연구토론회를 가진 것을 비롯(1981. 5. 7)해서, 신문윤리위원회는 「사건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간담회(11.26~27)를 가졌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1982.3.30)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또 「언론중재」(1982 봄), 「신문과 방송」(1982.2) 「신문연구」(1982 여름) 등의 언론 전문지들도 이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특집으로 다루어 언론의 자체반성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언론침해에 대한 판례도 많이 나왔는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또 대법원이 1982년 2월 25일 「법정에서의 방청촬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법정에서의 촬영에는 재판부의 허가 와 원고 및 피고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도 언론침해를 막으려는 사법부의 배려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이미 촬영된 사진이라도 본인의 사전동의 없이는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초상권」에 관한 판결이 1982년 7월 24일 서울 민사지법에서 처음으로 나와 언론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⁹⁾이런 권익침해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큰 사건이

있을 때면 흔히 반복되었다. 1987 년의 범양상선 사건 때에는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범양사원들과 관련자들이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항의를 제기하기까지 했었다. 비슷한 보도태도는 1982 년의 장영자 사건과 1988 년 초의 새마을운동 중앙회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되풀이 되어서 언론의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었다.

2. 언론기업의 성장과 높아진 권리의식

1980 년대는 언론인이 수사기관에 부당하게 연행당한 사건은 70 년대 또는 그 이전과 비교하면 많지는 않았다. 이는 언론 통폐합 이후 언론이 구조적으로 통제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언론인이 당국에 연행될 사건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1986 년 9 월에 발간한 「말」지가 특집으로 「보도지침」을 다루면서 정부당국의 언론통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폭로했고, 1988 년 12 월 10 일 국정감사에서 문공부가 국회문공위에 제출한 「언론인 개별 접촉 보고서」에서 일부의 진상이 밝혀졌듯이 80 년대의 언론은 정부의 조직적인 통제하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80 년대의 언론이 여러 가지 통제상황에 처해있기는 했으나 그 이전과는 달라진 측면이 있었다. 첫째는 언론기본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구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이었다. 언론기본법은 자유언론을 억압하는 독소조항도 있었지만 언론중재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은 한국언론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중재위원회가 구성된 뒤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외국의 이론도 많이 소개되었다. 둘째로는 이제는 한국의 언론도 자유의 신장과 함께 책임과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단계가 되었다는 인식이 언론과 독자 나아가서는 국민들 사이에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기에는 언론이 5 공화국 이후 기업적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기록했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중앙일간지의 총 자산액을 1979 년을 기준으로 하여 8 년 후인 1987 년과 대비해 보면 4 배 내지 13 배까지 증가했으며, 1986 년에서 1987 년 사이의 1 년간 당기 순익은 2 배 이상의 호황을 누렸었다.

「매경연감」에 나타나는 4 대 언론기업의 성장은 다음과 같다.

조선: 1978(65 억 7 천만) 1987 (610 억 1 천만) 9.3 배

동아: 1980(176 억 5 천만) 1987(630 억) 3.6 배

한국: 1982(207 억 9 천만) 1987(540 억) 2.6 배

중앙: 1982(115 억 4 천만) 1987(1,528 억 7 천만) 13.2 배 10)

셋째로는 국민과 기업체 연예인 그리고 정치가 등이 언론의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을 묵인하지 않고 바로잡겠다는 권리의식이 높아졌다. 이전까지는 언론에 피해 당한 사람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앞의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970 년대 후반에는 이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는 피해자가언론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피해를 보상받거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80 년대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한 1981 년부터 1989 년 12 월 31 일까지 약 9 년 사이에 550 건에 이르는 중재신청이 접수되었다. 중재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에 제소한 사건도 같은 기간에 56 건에 달했다.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이며, 두번째 유형은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이다. 80 년대에 법원에 제소하여 법원에서 판결이 났 사건을 중재위원회가 발행하는

「언론중재」에 판결문이 게재된 사건은 모두 43 건이었다. 이를 소송내용에 따라 다시 대별해 보면 ① 벌금, ②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 ③ 사죄광고 게재, ④ 정정보도게재 등이다.

(1) 벌금형

80년대 들어 첫번째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은 1983년 1월에 있었던 탁명환씨의 피소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피고 탁명환 씨가 종교 월간지 「성별」에 게재한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 309 조 1 항 등을 적용하여 벌금 20 만원을 내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피고소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린 것이다.¹¹⁾

(2) 손해배상 · 위자료

손해배상 사건도 탁명환 씨가 피소 당한 사건이 80년대의 첫번째였다. 1983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탁씨가 발행 편집하는 월간 「현대종교」에 실린 기사가 목사 박윤식 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200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¹²⁾명예훼손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변호사 이일재 씨가 학원사가 발행하는 「주부생활」을 상대로 1 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1984년 4월 재판부는 학원사는 원고 이일재 씨에게 위자료 1 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쌍방은 항소하였는데 이해 12월 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학원사측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1988년 10월 학원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결국 4년이 넘는 재판 끝에 원고 이일재 씨는 원심대로 1 천 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 ¹³⁾연예인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원고의 승소판결로 끝이 났었다. 전 미스코리아 김성희 양은 월간 여성지 「마드모아젤」을 상대로 5 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는데 1989년 1월 재판부는 마드모아젤이 원고에게 1 천만원을 지급하고 마드모아젤은 본지와 한국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 김성희 양은 <여성동아>의 기사에 대해서도 5 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 천 만원의 위자료를 받는 동시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¹⁴⁾이 밖에 가수 조하문도 여원사가 발행하는 「신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5 천 만원을 청구하여 1989년 4월 5 백 만원의 위자료를 받는 동시에 신부 지면과 조선일보, 차아일보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¹⁵⁾(3) 초상권 · 저작권의 보호 TV 텔런트 한혜숙 양이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초상권도 재산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혜숙 양은 상품 안내책자에 쓰일 목적으로 찍은 사진으로 월간지 광고에 사용한 것은 초상권침해라 하여 광고대행사와 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987년 1월 20일 피고 엘지애드와 반도패션이 한혜숙 양에게 손해배상금 8 백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¹⁶⁾극작가와 번역작가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소송도 있었다. 1983년 10월 한운사 씨 등 한국방송작가협회 소속 극작가 16 명 은 한국방송공사와 KBS 방송사업단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은 드라마작가의 동의 없이 방송국이 드라마 녹화작품을 TV에 방영한 후 이를 비디오 테이프로 복사하여 판매한 행위는 작가들의 녹화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드라마가 연기자, 연출자,

기술진 등의 창작적 기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합저작물로서 방송국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극본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작품에 대한 방송국측의 권리는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밝히고, 한국방송공사와 KBS 방송사업단은 방송사업단이 만들어 시판 중이었던 「TV 문학관」 등 드라마 복제테이프 판매대금의 10%인 2백 88만 6천 6백 82원을 작가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7) 1984년 7월에는 저작권리 완전히 성립하기 전인 번역원고라도 타인이 원작을 별도로 번역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번역문학가 안정효씨가 재단법인 한국문학진흥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다. 원고 안씨는 한미숙 씨의 작품 「아름다운 영가」를 1983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으로 선정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기로 한국문학진흥재단과 작품 번역계약을 맺고 이 작품을 번역하여 미국인 바바라민츠 여사의 교열을 거친 후 한국문학진흥재단에 번역원고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백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원작가 한말숙 씨는 이 번역원고를 미국인 스잔 크라우더에게 다시 교열을 부탁했는데, 스잔 크라우더는 이 번역이 원작의 문학성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열을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이 직접 다시 번역하겠다고 원작자인 한씨의 승락을 얻어 작품을 번역하였고, 문학진흥재단은 스잔 크라우더의 이름으로 이 번역본을 출간하였다. 그러자 안씨는 문학진흥재단이 자신의 번역원고를 자신의 동의 없이 스잔 크라우더에게 제공하여 동인이 자신의 번역원고를 참고하여 좋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기타 다른 부분의 경우에도 어휘나 문장 구성만을 일부 바꾼 채, 이 작품을 재번역함으로써 표절행위를 하게 하는 한편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스잔 크라우더의 이름으로 번역본을 출간,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본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안씨에게 문학진흥재단이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18) 이 판결은 문학작품을 번역했을 때에 번역자의 이익은 법률상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첫 판례를 남긴 것이었다.

4. 정정보도 청구

80년대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중재신청 건은 총 550건이다. 그런데 중재신청을 했으나 불성립, 각하 또는 기각 등의 결과가 나와서 신청인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법원에 제소한 경우는 56건이었다. 법원에 제소한 내용은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다. 첫째는 개인이 명예훼손 당한 사실을 회복하기 위해 제소한 사건이고, 둘째는 기업이 피해당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한 신청, 세번째는 정치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하여 정정보도 및 사과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개인이 법원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가운데 언론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판결은 1982년 11월에 있었던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 이의향 회장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신청 사건이었다. 이의향 씨는 동아일보 1982년 5월 27일자 『불구도 서러운데……장애자 기술 가르쳐 준다며 회비 착복』 제하의 기사가 허위 날조된 불법기사이며, 신청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기사의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며 신청인이 청구한 정정보도는 부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신문은 공표된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¹⁹⁾ 이로써 신청인 이의향 씨는 정정보도청구신청에서는 승소했으나, 이 기사에 대한 배상금 10 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설사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²⁰⁾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향 씨는 한국일보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1984. 7 서울민사지법; 1985. 1. 고등법원, 1986. 7. 고등법원)했으나 패소했다.²¹⁾ 이 사건은 법원이 중앙의 대일간지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언론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 재판 이후 각 언론기관이 기사의 명예훼손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원래 이 사건은 신청인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었는데 동아일보의 불출석으로 중재가 성립되지않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체의 정정보도청구신청사건으로는 1989 년 1 월 파스퇴르유업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사건은 파스퇴르가 승소하여 재판부는 중앙일보가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중앙일보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자 파스퇴르유업(주)은 판결에 의한 집행을 위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는 1989 년 3 월 4 일자 8 면과 15 면, 1989 년 3 월 6 일자 14 면에 판결 내용대로 각각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 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²²⁾ 정치인이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989 년 3 월 평민당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이었다. 이에 맞서 조선일보도 평민당을 고소했으나 판결이 나기 전에 평민당이 먼저 고소를 취하하고 조선일보도 이를 취하했으므로 법정에서의 판가름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판결여부와는 별문제로 국민과 정치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었다.

III. 끝으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80 년대 언론의 법윤리 환경은 70 년대 이전의 그것과는 여러 면에서 현저히 달라졌다.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80 년대에 가장 큰 제도적인 변화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이다. 중재위 구성자체가 언론의 법윤리적인 환경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기구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일반 국민의 언론침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했음은 중재신청 또는 법원제소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중재신청의 건수는 1988 년까지는 1 년에 대개 50 건 정도에 그쳤으나 1988 년부터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1989 년에는 121 건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양면적인 원인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하나는 6.29 선언 이후 신문과 잡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매체수의 증가는 일부 언론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었다. 사이비언론이 나타나고 언론침해의 사례도 비례해서 늘어났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언론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간편한 절차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에 제소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두번째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명예를 회복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 했을 때에 법원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는 판례가 많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명예훼손과 인권침해에 대해 시대조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 해석범위를 융통성있게 넓혀 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언론이 무심코 또는 하나의 관행으로 보도하던 내용도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신중한 자세로 갖게 되었다. 셋째로는, 잡지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 났다는 사실이다. 이 는 잡지가 80 년대에 대량판매를 위한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현상이다. 최근에는 여성지들의 명예훼손 기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대 신문사가 발행하는 잡지 가운데도 취재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고의성 있는 침해사례도 적지 않아서 언론의 새로운 윤리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넷째로는, 법원에 제소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다. 최근에는 여성지의 명예훼손에 대해 2 천 만원의 배상판결이 났던 사례까지도 있었다. 조선일보와 평민당의 고소사건은 법정판결 이전에 쌍방이 취하였지만 평민당은 조선일보에 대해 87 억 2 천 만원의 거액을 요구했던 것도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액이 높아지는 추세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법정소송의 경우 판결이전에 고소인이 취하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고법, 대법 등의 상고심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예회복 또는 피해보상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례를 남기게 되는 일이 80 년대 들어 여러 차례 나타났음을 뜻하는 것이다.

1) 정진석, 「한국언론사연구」 (일조각, 1983), PP. 29~32: 97~103; 정진석, "언론침해의 시대별 유형", 「언론중재」 1982 가을호, PP. 54~55 참조.

2) 이 조항에 관한 당시 법률가의 법 해석은 다음 글이 있다. 양윤식, "명예훼손죄란 어떤 것인가", 「철필」 1930. 7 (창간호); pp. 80~81.

3)정진석, 앞의 글, pp. 57~58.

4) 박경목, "보도준칙, - 미국신문의 경우" 「회지」 제 1 호, 1957, 8, pp.16~19.

5) 정진석, 「한국현대언론사론」 (전예원, 1985), pp. 284~285.

6) 정진석, 앞의 글, 「언론중재」 1982 가을호, p. 60, (표 2).

7) 한국신문편집인협회보, 1961. 4. (제 6 호) "유무죄 한계 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두 경우"; 이 사건에 대한 편협의 성명서는 「신문편집인협회 삼십년사」 (한국신문편집인협회. 1987), pp. 493~494.

8) 서울신문, 1961. 3.28, "민족일보 피소, 시중 은행장들 명예훼손으로"; 민족일보, 3.29, "본사 사장을 고소, 명예훼손 혐의로"

9) 초상권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1982 년 여름호에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었다. 초상권의 판결 내용은 「언론중재」, 1982 년 가을호, pp. 140~142.

10) 기자협회보, 1989. 1. 1. "5 공은 한국언론의 호황기".

11) 「언론중재」, 1983 봄호, pp. 174~176.

12) 「언론중재」, 1983 겨울호, pp. 184~188.

13) 「언론중재」, 1984 여름호, pp. 177~182; 1988 겨울호, pp. 167~174.

14) 「언론중재」, 1989 봄호, pp. 168~173 ; 1989 가을호, pp.173~ 179.

15) 「언론중재」, 1989 여름호, pp. 172~17s.

- 16) 「언론중재」, 1989 봄호, pp. 173~17s.
- 17) 「언론중재」, 1984 가을호, pp. 176~179.
- 18) 「언론중재」, 1985 봄호, pp. 165~168.
- 19) 「언론중재」, 1982 겨울호, pp. 168~172
- 20) 「언론중재」, 1983 겨울호, pp. 188~191; 1984 여름호
- 21) 「언론중재」, 1984 겨울호, PP. 174~176; 1985 여름호, pp. 176~179; 1986 가을호.
pp. 169~172.
- 22) 「언론중재」, 1989 봄호.pp. 158~167; 가을호, pp. 169 ~ 173.